

의안번호	2201233
의 퇴 인	이상식 의원
회 답 일	2024. 7. 8.
추 계 번호	24F1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투자분까지 7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로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658억원, 2031년 2조 12억원 등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총 12조 2,146억원 (연평균 1조 7,4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토지·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등에 대한 취득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31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안 제24조) ¹⁾	-11,658	-16,895	-17,473	-18,073	-18,695
- 임시 투자 세액공제 7년 연장	-11,658	-12,074	-12,507	-12,958	-13,427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6년 연장	-	-4,821	-4,965	-5,115	-5,268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안 제24조) ¹⁾	-19,341	-20,012	-122,146	-17,449	
- 임시 투자 세액공제 7년 연장	-13,915	-14,422	-90,961	-12,994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6년 연장	-5,427	-5,590	-31,185	-5,198	

주: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 2023년 투자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30년 투자분까지 7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추가분 공제율 상향 - (현행) 직전 3년 평균액 초과분의 4% - (개정안) 직전 3년 평균액 초과분의 10%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R&D 장비, 토지,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징수기준에 따라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5~2031년 발생하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6~2031년 발생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¹⁾ 및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²⁾를 참조하여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액(잠정치)를 기업규모·기술별로 추정

1) 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 9.

2) 기획재정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2023. 12.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투자계획 증감률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 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 「설비투자계획조사」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만 존재하며,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임시 투자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연구개발장비,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국가전략기술 R&D장비 및 토지·건축물의 취득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어려움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
 - 당기분 공제율(%): (일반) 대 1 → 3, 중견 5 → 7, 중소 10 → 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 → 6, 중견 6 → 10, 중소 12 → 18
 - 증가분 공제율(%): 3 → 10
- 개정안은 현행 2023년 투자분에만 적용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30년 투자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

[표 2]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단위: %)

	기본					임시 투자 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5	15	25	10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도 개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 기술 시설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2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4%)를 적용함
 - (기본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13%p 우대
 - (추가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p 우대

[표 3]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차이

(단위: %)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3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공제실적) 2023년 잠정실적 기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500억원 수준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483억원, 중견기업 9억원, 중소기업 8억원 수준

[표 4]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 2023년(잠정치)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8	9	7,483	7,500

자료: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 (2023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액)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

-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별·기술별로 안분
 - － 기업규모별 세액비중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규모별로 안분
 - － 명세서상 R&D 당기발생세액 비중(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실적 안분
- (국가전략기술) 기획재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상 수치를 인용하여 활용

[표 5] 기술유형별 시설투자 관련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투자	3,172	783	2,789	6,744
신성장·원천기술	216	177	6,146	6,538
국가전략기술	8	9	7,483	7,50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청 제출자료, 기재부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비투자계획조사」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세액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2023~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
 -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잠정): 대 -5.3%, 중견기업 9.8%, 중소기업 5.8%
 - －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망): 대 3.0%,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6.5%
 - ※ 2025년 이후로는 2024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변화
 - － 당기분 세액공제율(%): (일반) 대 1→3, 중견 5→7, 중소 10→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6, 중견 6→10, 중소 12→18
 - － 증가분 세액공제율(%):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10
(국가전략기술) 4→10

[표 6]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2025~2031년

(단위: 억원)

		2025	2026	...	2030	2031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3,817	4,066	...	5,230	5,570
	중견기업	1,099	1,146	...	1,356	1,415
	대기업	8,715	8,976	...	10,103	10,406
	소계	13,631	14,188	...	16,689	17,39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B)	중소기업	5,880	6,262	...	8,056	8,580
	중견기업	1,973	2,058	...	2,435	2,540
	대기업	20,350	20,960	...	23,591	24,299
	소계	28,203	29,281	...	34,083	35,419

차이 (B-A)	중소기업	2,063	2,197	...	2,826	3,010
	중견기업	874	912	...	1,079	1,126
	대기업	11,635	11,984	...	13,488	13,892
	소계	14,572	15,093	...	17,393	18,0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계획조사」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

-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2023~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잠정): 대 -5.3%, 중견기업 9.8%, 중소기업 5.8%
 -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망): 대 3.0%,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6.5%
- ※ 2025년 이후는 2024년과 동일한 투자 증감률을 적용

[표 7]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	2029	2030	2031
중소기업	8	9	10	...	12	12	13
중견기업	10	10	11	...	12	13	13
대기업	7,086	7,299	7,518	...	8,215	8,462	8,715
계	7,105	7,318	7,538	...	8,239	8,487	8,742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 15, 중견 15, 중소 25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 3, 중견 6, 중소 12

[표 8]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6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 2026~2031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A)	1,513	1,558	1,605	1,862	1,918	1,976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B)	7,538	7,765	7,998	9,275	9,554	9,842
차이 (B-A)	6,026	6,207	6,393	7,413	7,636	7,8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투자분까지 7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로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658억원, 2031년 2조 12억원 등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총 12조 2,146억원 (연평균 1조 7,4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7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6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 총 15조 2,683억원 감소하나, 농어촌특별세 과세(3조 537억원)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12조 2,146억원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31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안 제24조) ¹⁾	-11,658	-16,895	-17,473	-18,073	-18,695
- 임시 투자 세액공제 7년 연장	-11,658	-12,074	-12,507	-12,958	-13,427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6년 연장	-	-4,821	-4,965	-5,115	-5,268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안 제24조) ¹⁾	-19,341	-20,012	-122,146	-17,449	
- 임시 투자 세액공제 7년 연장	-13,915	-14,422	-90,961	-12,994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6년 연장	-5,427	-5,590	-31,185	-5,198	

주: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